

하나비자캐시 가맹점 약관 개정 전후 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3.07.26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1조 ~ 제17조 생 락	제1조 ~ 제17조 좌 동	
제18조(자격정지·상실 및 탈회) ① 생 락 ② 생 락 ③ 생 락 ④ 신 설	제18조(자격정지·상실 및 탈회)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④ 은행은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30일전까지 가맹점에게 통보 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.	고객에게 불합리한 가맹점자격 정지내용 변경
제19조 ~ 제20조 생 락	제19조 ~ 제20조 좌 동	
제21조(규약변경 승인 등)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발행기관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가맹점에 통지하여야 하며, 가맹점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는 변경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	제21조(약관변경) 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에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적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그 내용을 가맹점에 개별통지함과 동시에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적용 예정일 전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알리고, 그 밖에는 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알립니다. ②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약관의 변경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할 경우 “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	고객 권익을 위해 약관변경 통지내용 및 동의방법 구체적으로 명시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22조 ~ 제23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생 략</p> <p>제24조(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<u>관계법령 또는 상관계에</u> 따릅니다.</p> <p>제25조(관할법원)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<u>소송은 발행기관의 본·지점 소재지 또는 가맹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</u> 합니다.</p>	<p>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” 는 내용을 통지합니다.</p> <p>③ 은행은 가맹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제22조 ~ 제23조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좌 동</p> <p>제24조(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)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<u>전자금융거래법,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계법령에</u> 따릅니다.</p> <p>제25조(관할법원)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<u>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</u> 따릅니다.</p>	<p>고객의 권익을 위해 관련 약관/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함</p> <p>고객 권익을 위해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로 개선함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